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6739      |
| 의 퇴 인  | 박수현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 | 2026. 3. 11. |
| 추 계 번호 | 26C0843      |

#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,000만원(연평균 1,8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-----|
|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 | 90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90 | 18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|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의 체계적인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     |
| 2  | 안 제7조(전문인력의 양성)             |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 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방송, 연구 등 한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(제1항)<br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한궁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2항)<br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궁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(제3항) | 의무규정<br>재량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3  | 안 제8조(학생 및 장애 학생의 체육활동 지원)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학생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     |
| 4  | 안 제9조(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 지원 등)  |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노인·장애인의 한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(제1항)<br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하여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<br>재량규정 |
| 5  | 안 제10조(연구·개발의 지원 등)       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·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·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 연구·개발을 촉진하여야 함(제2항)<br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동 연구·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연구·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<br>재량규정 |
| 6  | 안 제11조(한궁단체 및 한궁시설의 지원)   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궁단체와 한궁시설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        |
| 7  | 안 제12조(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)    |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, 한궁지도자의 파견,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<br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| 재량규정         |
| 8  | 안 제13조(국제기구의 유치 지원)        | 한궁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기구 유치 조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(제2항)<br>국가는 개발도상국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한궁전문가를 파견하거나 한궁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<br>재량규정 |
| 9  | 안 제14조(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지원)      |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과 관련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(제1항)<br>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       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| ○    | -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7조(전문인력의 양성)             | ×    | -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<br>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·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|
| 3  | 안 제8조(학생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)   | ×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9조(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 지원 등)   | ×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10조(연구·개발의 지원 등)         | ×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안 제11조(한궁단체 및 한궁시설의 지원)     | ×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안 제12조(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)     | ×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안 제13조(국제기구의 유치 지원)         | ×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  | 안 제14조(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지원)       | ×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재정수반요인 중 전문인력의 양성(안 제7조), 학생 및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지원(안 제8조), 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 지원 등(안 제9조), 연구·개발의 지원 등(안 제10조), 한궁단체 및 한궁시설의 지원(안 제11조),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(안 제12조), 국제기구의 유치 지원(안 제13조) 및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지원(안 제14조)은 현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참고로, 현재 궁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없는 상황이며, 전통무예 진흥 사업(2025년 예산 12억 6,000만원)에서 궁도가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한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 소요 발생 예상
-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한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9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 - 문화체육관광부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3년에 9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2] 한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 계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기본계획의 수립<br>(안 제5조) | 90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90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이제정 | 이진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|
| 이제정 | 02-6788-3739 | jejeong2@na.go.kr |